



제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 비준동의안

검 토 보 고

■ 정부제출 (의안번호 제2207717호)

2025. 2.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제안 및 회부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참고사항	2
IV. 검토의견	3
1. 개요	3
2. 국회 비준동의 사유에 대한 검토	5
3.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	9
4. 종합의견	12
 [참고 1] 우리나라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현황	14
[참고 2] 키르기스공화국 개황자료	18

I. 제안 및 회부

1. 제출자 : 정 부

2. 제출일자 : 2025년 1월 22일

3. 회부일자 : 2025년 1월 23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이 의정서의 체결을 통하여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스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개정하여 조세 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협정에 따른 혜택이 부여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OECD 및 G20이 주도하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대응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 움직임에 참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납세자가 체약국의 조치로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상 결과가 자신에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라고 볼 때 상호 합의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국가를 거주지국에서 양 체약국으로 확대함(안 제2조).

나. 정보를 요청받은 체약국은 자국의 조세 목적상 그러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더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국의 정보수집 수단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체약국의 정보교환 협조 의무를 강화함(안 제3조).

다. 이 협정의 혜택을 얻는 것이 주요 목적인 계약 또는 거래에 대해, 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의 대상과 목적에 부합한다고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음(안 제4조).

III. 참고사항

가. 입법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예산조치 : 별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고

다. 체결경위

- 2018. 1. 문안 교섭 개시
- 2024. 4. 최종 문안 합의
- 2024. 11. 26. 제50회 국무회의 심의
- 2024. 12. 3. 서명(서울)

IV. 검토의견

1. 개 요

가. 이중과세 방지협정의 의의와 주요 내용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이하 ‘이중과세 방지협정’이라 함)은 두 나라 간에 체결되는 조약으로,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국가가 동시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임.

기업이나 개인이 외국에서 소득을 벌어들일 경우, 소득이 발생한 국가(원천지국)와 거주 국가에서 동시에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음. 이를 방지하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 국제 거래와 투자 활동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이중과세(double taxation)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간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이중과세 방지협정임.

이중과세 방지협정의 주요 내용은, ①협정에 따라 특정 소득의 과세 권한을 한쪽 국가에 우선 부여하는 과세권 배분, ②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거주국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또는 면제하는 방식의 이중과세 조정 방법, ③두 국가 간 세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상호 협력 절차(MAP, Mutual Agreement Procedure), ④탈세 방지를 위해 국가 간 금융 및 세무 정보를 교환하는 정보 교환 조항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나. 한-키르기즈공화국 이중과세 방지협정의 체결 배경과 개요

이중과세 방지협정은 단순히 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넘어, 해외 투자 활성화, 국제 무역 및 교류 촉진, 탈세 및 조세 회피 방지를 통해 국가 간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여러 국가와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체결¹⁾해 왔음.

한편, 2008년(이명박 정부) 당시,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자원외교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키르기즈공화국²⁾과 같은 자원보유국과의 조세조약 체결을 위해 노력을 강화하였음. 그 결과,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³⁾(이하 ‘협정’이라 함)이 체결되었음.

동 협정은 전문, 본문 31개조 및 의정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 중 대상조세, 배당, 이자 등에서 우리나라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과세대상을 축소·변경하거나 일부 세율을 제한하는 등의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⁴⁾의 규정에

1) 우리나라는 99개국과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체결(2024.12. 기준)하였고, 이 가운데 96개국에서 협약이 발효 중임. [참고 1] 참조(p.11.)

2)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국가로 금, 주석, 우라늄 등의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키르기즈공화국의 총리(2007.11.), 제1부총리(2008.4.)가 잇달아 방한하는 등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에 큰 관심을 보였고, 우리기업도 발전, 건설, 금융 등의 분야에 투자를 추진 중에 있어 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조세조약의 조속한 체결이 필요하였음.(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한-키르기즈스탄 이중과세방지협정 제1차 협상 개최’, 2008.5.20.)

3) 조약 제2165호, 2013. 11.22. 발효(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4) 「대한민국헌법」 제60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바⁵⁾ 있음.

다. 한-키르기스공화국 이중과세 방지협정 개정 경위

동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 비준동의안은 그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여 조세 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협정에 따른 혜택이 부여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OECD 및 G20이 주도하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⁶⁾ (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의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 (이하 'BEPS 방지 프로젝트⁷⁾') 이행을 위한 국제적 공조 움직임에 적극 참여하려는 것임.

2018년 1월 우리 정부 측의 개정 제안 이후 외교채널을 통한 서면 협상이 진행⁸⁾되었고, 2024년 4월 최종 문안에 양국이 합의한 후 2024년 12월 3일 서울에서 서명되었음.

2. 국회 비준동의 사유에 대한 검토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동 협정의 개정 내용이 입법

5) 국회회의록 참고(2013.6.25. 제316회국회 제8차 본회의)

6)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이란, 다국적 기업들이 법인의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율이 낮거나 조세 혜택이 많은 국가로 소득을 이전하는 행위를 뜻하며, 기업이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없는 국가(조세피난처)에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함.

7)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G20(주요 20개국)이 주도하여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프로젝트로서, 기업들이 불법적인 조세 회피 전략을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글로벌 차원의 공통된 세법과 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함.

8) 서면 협상의 특성상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되었으나, OECD 최신 기준(조세 혜택을 위해 제3국을 경유하는 인위적인 거래, 일명 '조약 쇼핑(Treaty Shopping)' 방지 강화 및 정보 교환 협력 강화 등)을 충족하기 위한 동 개정제 별다른 이견 없이 합의 도출(외교부 설명)

사항⁹⁾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는지가 국회 비준동의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됨.

동 협정의 제29조를 개정¹⁰⁾하는 의정서안은 혜택에 대한 자격 조항을 신설하여 협정의 혜택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주요목적기준 (Principal Purpose Test, 이하 ‘PPT’라 함)’¹¹⁾을 채택하고 있음. 이는 납세자가 거래 등을 수행하는 주요 목적들 중 하나가 특정 조세조약상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것일 경우, 해당 조세조약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

PPT 규정은 국가 간 조세제도의 차이나 허점을 악용한 조세회피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와 같은 개정 취지는 「BEPS 방지 다자협약」¹²⁾ 제7조(조약 남용 방지)¹³⁾의 규정 취지와 일치함.

이와 관련하여, 국내법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

9) 국회의 입법 권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약의 내용이 국내법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거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함. 이중과세방지협정이 국내법에 대한 특례를 포함하거나, 과세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으로 볼 수 있음.

10) 협정 제29조(혜택의 제한)을 삭제하고 제29조(혜택에 대한 자격)으로 대체

11)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이라고도 함)의 혜택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인위적인 거래나 구조를 설정하는 경우, 해당 혜택을 부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임. 이는 OECD 및 G20의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조세조약을 악용한 조세 회피 및 소득 이전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임. 특히, 제한세율 적용 또는 이중과세 방지 혜택을 악용한 탈세 또는 조세의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임.

12)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6월 7일 파리 OECD에서 서명된 협약

13) 제7조(조약 남용 방지) 1. 대상조세협정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상조세협정에 따른 혜택은, 모든 관련 사실 및 정황을 고려할 때 그 혜택을 얻는 것이 그 혜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시킨 어느 계약 또는 거래의 주요목적들 중 하나였다고 합리적으로 결론지을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그 대상조세협정의 관련 규정의 목적 및 의도에 부합한다고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소득 또는 자본 항목에 대해서도 부여되지 않는다.(국제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 > 조세조약 > BEPS다자협약)

법’이라 함) 제3조제1항 및 제2항¹⁴⁾에서는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¹⁵⁾을 규정하고, 특히 같은 조 제3항에서 “국제거래에서 이 법 및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거래 등을 하는 경우에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협정의 개정 조문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음.

구분	국제조세법 제3조제3항	동 협정 개정 조문
규정	제3조(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③ 국제거래에서 이 법 및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u>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이하 이 조에서 “우회거래”라 한다)</u>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및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제29조 혜택에 대한 자격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할 때 이 협정에 따른 혜택을 얻는 것이 그 혜택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시킨 어떠한 계약이나 거래의 주요 목적들 중 하나였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의 대상과 목적에 부합한다고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에 따른 혜택은 소득 또는 자본 항목에 대하여 부여되지 않는다.
적용 요건	① 이 법 및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해 ② 제3자를 통한 간접거래 또는 여러 번 거래를 거친 경우	① 거래의 주요 목적들 중 하나가 이 협정 혜택을 얻는 것 ② 혜택 부여가 협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입증되지 않을 것
효과	실질에 따라 세금 부과(실질과세)	협정 혜택을 부여하지 않음

이처럼 조세 회피를 방지하려는 두 규정의 취지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

14) 「국제조세법」 제3조(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15) 명목상으로 보이는 거래 형태가 아니라, 실제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임.

나, 국제조세법은 ① 이 법 및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② 제3자를 통한 간접거래를 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고, 동 협정의 제29조 개정안은 ① 거래의 주요 목적들 중 하나가 이 협정의 혜택을 얻는 것이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고 ② 그 혜택의 부여가 이 협약 관련 규정의 대상과 목적에 부합한다고 입증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함.

아울러 양자의 효과 또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바, 국제조세법의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데에 비해 개정안의 경우 기존 협약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차이로 인해,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과 PPT가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협정 제29조의 개정 규정은 국내법인 국제조세법 제3조와 동일한 내용의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움.

이와 같이 동 협정의 개정 내용은 국내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과 그 요건 및 효과에서 차이가 있는 PPT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 법률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내 법률을 변경·수정하는 효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입법사항에 대한 조약으로 볼 수 있음.

3.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

협정 개정을 규정한 제30조(발효)제3항16)에 따라, 양국이 합의한 내용은 협정 전문, 상호 합의 절차, 정보교환 및 혜택 자격에 관한 사항임.

가. 협정 전문(동의안 제1조)

기존 협정 조문	협정 개정 조문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스공화국 정부는,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u>협정의 전문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u>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스공화국 정부는, 양국의 경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조세 분야에서의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그리고 <u>탈세 또는 조세 회피(제3국 거주자가 간접 혜택을 받기 위하여 이 협정에서 규정된 조세 감면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조약의 편의적 선택 계약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통한 비과세나 과세 경감의 기회를 창출함 없이,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u>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동의안 제1조는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의 협정 체결 의사를 밝힌 기존 전문에서 더 나아가, 조세 협력 강화 및 조세 회피 방지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담아, 조세 감면이 정당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명확하

16) 양 계약국은 상호 합의를 통하여 그 규정이 이 협정의 필수적인 일부를 이루는 별도의 의정서로 이 협정을 개정할 수 있다.

고 구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국제적 조세 조약의 악용을 방지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였음.

동 규정을 통해 양국은 공정한 과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제 조세 규범에 맞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나. 상호 합의 절차(동의안 제2조)

기존 협정 조문	협정 개정 조문
1. 어느 인이 한쪽 또는 양쪽 체약국 모두의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 그는 그러한 국가들의 국내법이 규정하는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u>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u>, 또는 그 사안이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u> 그의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협정 제26조(상호 합의 절차)제1항의 <u>첫 문장을 삭제</u>하고 <u>다음으로 대체</u>한다. “어느 인이 한쪽 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로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상 결과가 자신에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 경우, 그 인은 그러한 체약국의 국내법에서 규정하는 구제 수단과 무관하게, <u>어느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u> 그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동의안 제2조는 과세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납세자가 기존에는 거주지국 또는 국적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던 규정을 개정하여 양 체약국 중 어느 한쪽에도 사안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음.

동 규정을 통해 납세자는 조세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조세 분쟁 해결 속도가 빨라지는 등 절차 개선과 함께

권리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정보교환(동의안 제3조)

동의안 제3조는 정보 요청을 받은 계약국은 조세 목적과 관계없이 정보 제공 의무를 가지며, 단순히 금융기관, 명의인, 대리인 등의 자격으로 보유한 정보이거나 특정인의 소유권과 관련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

동 규정을 통해 양국 간 조세 정보 교환이 강화되며, 정보 제공 거부 사유가 최소화됨에 따라 국제적인 조세 회피 및 탈세 방지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라. 혜택에 대한 자격(동의안 제4조)

제29조 혜택의 제한	협정 제29조(혜택의 제한)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된 제29조(혜택에 대한 자격)로 대체한다. “제29조 혜택에 대한 자격
협정에서 다루는 소득의 지급에 대한 권리의 생성 또는 양도와 관련된 어떠한 인의 주요 목적 또는 주요 목적들 중의 하나가 그 생성 또는 양도를 통하여 이 협정의 조들을 이용하는 것이었을 경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탈세 또는 조세의 회피를 예방하기 위한 한쪽 계약국의 국내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할 때 이 협정에 따른 혜택을 얻는 것이 그 혜택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시킨 어떠한 계약이나 거래의 주요 목적들 중 하나였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의 대상과 목적에 부합한다고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에 따른 혜택은 소득 또는 자본 항목에 대하여 부여되지 않는다.”

동의안 제4조는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협정 혜택의 주요 목적을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엄격한 부여 원칙을 설정하고 있음. 또한, 예외 적용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혜택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있음.

동 규정을 통해 납세자의 거래 목적이 비과세·저율과세 등의 혜택만을 누리기 위한 것일 경우 조세조약에 따른 혜택을 부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조세조약을 악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여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종합의견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 비준동의안」은 이 협정을 통한 부당한 혜택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과세에 대한 상호 합의 절차 신청 국가를 양 체약국으로 확대하는 등 우리나라의 과세권 보호 및 납세자 권리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 6788-5270

참고 1

우리나라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현황

[2025년 2월 기준 총 99개국 체결(발효 96, 미발효 2, 효력정지 1)]

	국가 / 지역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1	동북아시아 (5)	일본	1970. 3. 3. 1998.10. 8.	개정
2		중국	1994. 3. 28. 2006. 3.23.	개정
3		홍콩	2014. 7. 8.	
4		몽골	1992. 4.17.	
5		대만	2021.11.17.	
6	동남아시아 (10)	미얀마	2002. 2.22.	
7		라오스	2004.11.29.	
8		싱가포르	1979.11. 6. 2010. 5.24. 2019. 5.13.	개정
9		필리핀	1984. 2.21.	
10		태국	1974.8.26. 2006.11.16.	개정
11		인도네시아	1988.11.10.	
12		브루나이	2014.12.9.	
13		말레이시아	1982. 4.20.	
14		베트남	1994. 5.20. 2019.11.27.	개정
15		캄보디아	2019.11.25.	
16	서남아시아 (5)	네팔	2001.10.5.	
17		방글라데시	1983. 5.10.	
18		스리랑카	1984. 5.28.	
19		인도	1985. 7.19. 2015. 5.18.	개정
20		파키스탄	1987. 4.13.	
21	러시아·CIS (9)	러시아	1992.11.19.	
22		아제르바이잔	2008. 5.19.	
23		벨라루스	2002. 5.20.	
24		우즈베키스탄	1998. 2.11. 2019. 4.19.	개정
25		우크라이나	1999. 9.29.	
26		투르크메니스탄	2015. 4.13. 2019. 4.17.	개정
27		키르기스스탄	2012.12.11. 2024.12. 3.	개정
			개정 미발효	

28		타지키스탄	2013. 7.31.	2016. 9.28.	개정
			2021.11.30.	2022. 6.11.	
29		카자흐스탄	1997.10.18.	1999. 4. 9.	
30	미주 (11)	멕시코	1994.10.6.	1995. 2.11.	
31		베네수엘라	2006. 6.26.	2007.1.15.	
32		칠레	2002. 4.18.	2003. 7.25.	
33		캐나다	1978. 2.10.	1980.12.19.	개정
			2006. 9. 5.	2006.12.18.	
34		콜롬비아	2010. 7.27.	2014. 7. 3.	
35		파나마	2010.10.20.	2012. 4. 1.	
36		페루	2012. 5. 8.	2014. 3. 3.	
37		에콰도르	2012.10. 8.	2013.10.16.	
38		우루과이	2011.11.29.	2013. 1.22.	
39		브라질	1989. 3. 7.	1991.11.21.	개정
			2015. 4.24.	2018. 1.10.	
40		미국	1976. 6.04.	1979.10.20	
41	유럽 (35)	그리스	1995. 3.20.	1998. 7.10.	
42		네덜란드	1978.10.25.	1981. 4.17.	개정
			1998.11. 6.	1999. 4. 2.	
43		노르웨이	1982.10. 5.	1984. 3. 1.	
44		덴마크	1977.10.11.	1979. 1. 7.	
45		독일	1976.12.14.	1978. 5. 4.	개정
			2000. 3.10.	2002.10.31.	
46		라트비아	2008. 6.15.	2009.12.26.	
47		루마니아	1993.10.11.	1994.10. 6.	
48		룩셈부르크	1984.11.07.	1986.12.26.	개정
			2012. 5.29.	2013. 9. 4.	
49		리투아니아	2006. 4.20.	2007. 7.14.	
50		몰타	1997. 3.25.	1998. 3.21.	
51		벨기에	1977. 8.29.	1979. 9.19.	개정
			1982. 5.21.	1982. 5.21.	
			1994. 4.20.	1996.12.31.	
			2010. 3. 8.	2015.12. 1.	
52		불가리아	1994. 3.11.	1995. 6.22.	
53		세르비아	2016. 1.22.	2016.11.17.	
54		스웨덴	1981. 5.27.	1982. 9. 9.	
55		스위스	1980. 2.12.	1981. 4.22.	개정
			2010.12.28.	2018. 1.10.	
			2019. 5.17.	2020.10.28.	
56		스페인	1994. 1.17.	1994.11.21.	
57		슬로바키아	2001. 8.27.	2003. 7. 8.	
58		슬로베니아	2005. 4.25.	2006. 3. 2.	
59		아이슬란드	2008. 5.15.	2008.10.23.	

60		아일랜드	1990. 7.18.	1991.12.27.	
61		안도라	2023.11. 3.	미발효	
62		알바니아	2006. 5.17.	2007. 1.13.	
63		에스토니아	2009. 9.23.	2010. 5.25.	
64		영국	1977. 4.21.	1978. 5.13.	개정
			1996.10.25.	1996.12.30.	
65		이탈리아	1989. 1.10.	1992. 7.14.	개정
			2012. 4. 3.	2015. 1.23.	
66		조지아	2016. 3.31.	2016.11.17	
67		체코	1992. 4.27.	1995. 3. 3.	개정
			2018. 1.12.	2019.12.20.	
68		크로아티아	2002.11.13.	2006. 9.15.	
69		튀르키예	1983.12.24.	1986. 3.27.	개정
			2021.10.22.	2024. 7.21.	
70		포르투갈	1996. 1.26.	1997.12.21.	
71		폴란드	1991. 6.21.	1992. 2.21.	개정
			2013.10.22.	2016.10.15.	
72		프랑스	1979. 6.19.	1981. 2. 1.	개정
			1991. 4. 9.	1992. 3. 1.	
73		핀란드	1979. 2. 8.	1981.12.23.	
74		헝가리	1989. 3.29.	1990. 4. 1.	
75		오스트리아	1985.10. 8.	1987.12.1.	개정
			2001. 5.28.	2002. 3.30.	
			2021. 6.14.	2023. 3. 1.	
76	대양주 (4)	파푸아뉴기니	1996.11.23	1998. 4.21.	
77		히지	1994. 9.19.	1995. 2.17.	
78		호주	1982. 7.12.	1984. 1. 1.	
79		뉴질랜드	1981.10. 6.	1983.4.22.	개정
			1997. 7.14.	1997.10.10.	
80	중동 (9)	쿠웨이트	1998.12. 5.	2000. 6.13.	개정
			2007.10. 2.	2010.12.27.	
81		바레인	2012. 5. 1.	2013. 4.26.	
82		사우디	2007. 3.24.	2008.12. 1.	
83		아랍에미리트	2003. 9.22.	2005. 3. 9.	개정
			2019. 2.27.	2020. 2.29.	
84		요르단	2004. 7.24.	2005. 3.28.	
85		이란	2006. 7. 6.	2009.12.8.	
86		오만	2005. 9.23.	2006. 2.13.	
87		카타르	2007. 3.27.	2009. 4.15.	
88		이스라엘	1997. 3.18.	1997.12.13.	
89	아프리카 (11)	가봉	2010.10.25.	2015.12. 2.	
90		나이지리아	2006.11. 6.	효력정지	
91		남아공	1995. 7. 7.	1996. 1. 7.	

92		수단	2004. 9.10.	미발효	
93		알제리	2001.11.24.	2006. 8.31.	
94		튀니지	1988. 9.27.	1989.11.25.	
95		케냐	2014. 7. 8.	2017. 4. 3.	
96		에티오피아	2016. 5.26.	2017.10.31.	
97		이집트	1992.12. 9.	1994. 2. 5.	
98		모로코	1999. 1.27	2000. 6.16	
99		르완다	2023. 9.13.	2024.12.19.	

참고 2

키르기즈공화국 약황

【 일반사항 】

- 국 명 : 키르기즈공화국(Kyrgyz Republic)
- 수 도 : 비슈케크(Bishkek, 117만명('24.6월, 키 통계청))
- 인 구 : 717만명('24.6, 키 통계청)
- 면 적 : 199,951km²(한반도의 0.89배)
- 위 치 : 중앙아시아(중국, 카자흐, 우즈베크, 타지키스탄 접경)
- 기 후 : 대륙성, 건조 기후
- 주요민족 : 키르기즈인(73%), 우즈베크인(15%), 러시아인(6%)
- 언 어 : 키르기즈어(공식국어), 러시아어(공용어)
- 종 교 : 이슬람교(80%), 러시아정교(15%), 기타(5%)
- 시 차 : 우리시간 -3

【 정치현황 】

- 정부형태 : 대통령제
- 의회구성(총 90석)
 - 아따주르트 키르기스스탄(Ata-Zhurt Kyrgyzstan)당,
 - 이세님(Ishenim)당, 인뜨막(Yntymak)당 등
- 정부 주요인사
 - 대통령 : 사디르 자파로프(Sadyr Zhaparov)
 - 국회의장 : 누를란베크 샤키예프(Nurlanbek Shakiev)
 - 내각실장(총리) : 아킬베크 자파로프(Akylbek Zhaparov)
 - 외교장관 : 제엔베크 쿨루바예프(Zheenbek Kulubaev)
- 국제기구 가입 : UN('92.3), WTO('98.12)

【 경제현황 】 ('23, IMF)

- GDP : 139억불
- 1인당 GDP : 2,018불(추정치)
- 경제성장률 : 6.2%('23, EIU 추정치)
- 물가상승률 : 10.7%
- 교역규모 : 124.23억불('23, EIU 추정치)
 - 수출 : 35.81억불 / - 수입 : 88.42억불
- 화폐단위 : сом(Som) / (US \$1=87.86сом)('23, EIU)
- 주요자원(bp) : 금, 석탄, 안티몬, 수은, 천연가스 등

【 독립('91) 이후 정세 변화 】

- '90.10월 아카예프 소연방 키르기즈공화국 초대대통령 취임
- '91. 8월 독립선언
- '05. 4월 톨립혁명('05.3월)으로 아카예프 대통령 사임
- '05. 8월 바키예프 대통령 취임
- '10. 4월 반정부 시위로 대통령 사임 및 과도정부 수립
- '10. 6월 헌법개정 국민투표로 의원내각제 도입
- '10. 7월 오톤바예바 대통령 취임
- '10.10월 총선 / 아탐바예프 총리 내각 출범
- '11.12월 아탐바예프 대통령 취임
- '15.10월 총선
- '17.11월 제엔베크코프 대통령 취임
- '18. 4월 아불가지예프 총리 내각 출범
- '20. 6월 아불가지예프 총리 사임/보로노프 총리 내각 출범
- '20.10월 총선(10.4) 직후 불복시위 발생 / 총리, 국회의장 사임(10.6, 10.10) / 자파로프 총리 내각 출범(10.14) / 대통령 사임(10.15) / 자파로프 총리, 대통령 직무대행
- '20. 11월 자파로프 총리 사임, 마미토프 국회의장 대통령 대행(11.14)
- '21. 1월 자파로프 대통령 취임
- '21. 2월 마리포프 총리 내각 출범
- '21. 5월 헌법개정 국민투표로 대통령제 도입 (총리실 폐지하고 장관 내각 구성)

- 투자규모('24, 신고액 기준)
 - 對키 투자(~'24년 3분기까지 누계) : 215백만불
 - 對한 투자(~'24년 4분기까지 누계) : 46.9백만불
- 고려인('23) : 18,953명
- 재외국민('23) : 1,276명
- 주요인사 교류

【 방한 】

- '93. 8월 칭기셰프 총리 방한(대전 EXPO)
- '94. 3월 주마굴로프 총리 방한(세계일보사 초청)
- '97. 6월 아카예프 대통령 방한
- '06. 7월 켄센쿨로프 외무장관 방한
- '07.11월 아탐바예프 총리 방한
- '08. 4월 아이다달리에프 부총리 방한
- '12. 6월 바바노프 총리 방한(제주평화포럼)
- '12. 7월 카자크바예프 외교장관 방한(한-중앙아 포럼)
- '13.11월 아탐바예프 대통령 방한
- '14. 2월 제엔베크코프 국회의장 방한
- '14. 7월 자마셰바 대법원장 방한
- '15. 1월 술탄베크코바 국회부의장 방한
- '15. 5월 오톤바예바 전 대통령 방한
- '15.10월 케멜로바 외교1차관 방한(한-중앙아 포럼)
- '16.11월 케멜로바 외교1차관 방한(한-중앙아 포럼)
- '17. 6월 오무르베크코바 국회부의장 방한
- '18.11월 케멜로바 외교1차관 방한(한-중앙아 포럼)
- '18.11월 잠시토프 검찰총장 방한
- '19.10월 무칸베토프 경제부 장관 방한
- '20.11월 니야잘리에프 외교1차관 방한(한-중앙아 포럼)
- '21. 9월 샤크라마토프 투자부 장관 방한
- '21.10월 니야즈베크코프 내무부 장관 방한
- '22. 5월 자니베크코프 농업부 장관 방한
- '22. 8월 아지키예프 비상사태부 장관 방한(국제소방 안전박람회)
- '22.10월 아만겔디예프 경제산업부 장관 방한
- '22.10월 쿨루바예프 외교장관 방한(공식방한/한-중앙아 포럼)
- '22.11월 맘베타쿠노프 교육과학부 장관 방한
- '23. 2월 샤키예프 국회의장 방한
- '23. 9월 샤키예프 국회의장 방한(제1차 한-중앙아 국회의장 회의)
- '24. 5월 이브라예프 에너지부 장관
- '24.11월 이사예프 외교1차관 방한(한-중앙아 포럼)

【 방문 】

- '08. 8월 이윤성 국회부의장 방키
- '17. 3월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방키
- '17. 4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방키
- '17. 9월 임성남 외교1차관 방키
- '18. 9월 이종배 한-키 의원친선협회장 방키
- '18.10월 윤강현 경제외교조정관 방키
- '19. 5월 문무일 검찰총장 방키
- '19. 7월 이낙연 국무총리 방키
- '21. 4월 박병석 국회의장 방키
- '21.10월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 방키
- '21.11월 박종수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방키
- '23. 7월 정우택 국회부의장 방키
- '23. 7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키

- '21.10월 정부부처 개편으로 아킬베크 자파로프 내각 출범
- '21.11월 총선

【 우리나라와의 관계 】

- 외교관계 수립 : 1992.1.31.
- 공관 설치 : '07.9월 1인 공관 개설
 - '08.7월 상주 대사관 개설
 - '24.8월 김광재 대사 부임
- 주한공관 설치 : '08.5월 상주 대사관 개설
 - '22.3월 아이다 이스마일로바(Aida Ismailova) 대사 부임
- 교역규모('24, KITA) : 1.783백만불
 - 수출 : 1.785백만불(승용차, 화장품, 차량부품, 건설장비 등)
 - 수입 : 3백만불(동물성한약재, 항공기부품, 직접회로반도체 등)

- '23.10월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방키
- '24. 5월 임기근 조달청장 방키

[기타]

- '23. 9월 한-키 정상회담(제78차 유엔총회)

【 북한과의 관계 】

- 외교관계 수립 : 1992.1.21.
- 주중 키르기스스탄대사가 북한 겸임
- 주러시아 북한 대사 키르기스스탄 겸임